

# 검 토 보 고 서

## 1. 대상조례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원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검토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3. 4(월)
- 제출자 : 김지근 의원 외 4명
- 위원회회부 : 2013. 3. 5(화)
- 위원회심사 : 2013. 3. 12(화)

## 3. 주요내용

- 2013. 1. 9.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조례에 반영
  - ▶ 조례안 제4조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4.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원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규정 개정시 연계되어 개정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특호 내지 제4호 구분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제1호 내지 제2호로 개정되었으며, 2013년 1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 제4조 별표 2의 제3호를 제2호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